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더나은 무배당 ABL저축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5년	일시납	만 15세 ~ 80세	만 15세 ~ 80세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가’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다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최저납입보험료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
-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4. 유지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지보너스 발생일까지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계약일부터 3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1.0%
보험기간 만기일	기본보험료의 0.5%

-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를 계산한다.
- 다. ‘유지보너스 준비금’은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라. 피보험자가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

산한 ‘유지보너스 준비금’ 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15. 기타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한다.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①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계약
-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된다.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3)’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라.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의 퇴직시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해당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또는 종업원이며, 법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는 계약
- (2)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보험기간 만기 계약해당일 - 30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 ② 피보험자 변경신청시 변경할 피보험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 ③ 변경할 피보험자의 변경 전 계약체결시점 나이가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변경 후 납입하려는 보험료가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3) 계약자가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 (4) ‘(3)’ 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승낙일부터 변경 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한다.
- (5) ‘(3)’ 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고, 변경 전·후의 정산 차액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추가 공제하거나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6) 회사는 변경할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 (7) ‘(4)’ 에 따른 승낙일 전일까지 계약자는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낙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8) ‘(6)’ 에 따라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을 취소한다.

(9) ‘(3)’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범용으로 한다.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아.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